

##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360
----------	-----

제출년월일 : 2000년 11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령시행령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함
-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기타 자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함
-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용하되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을 함
-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시·군 등에 지원함
-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5년거치후 5년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연 5%로 함
-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 담당사무관으로 함
- 기금의 결산보고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함

**3. 제정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

**4. 의안전문**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북도의 출연금
3. 충청북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시·군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관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75호 1964. 2. 22)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한다.
- 3 ~ 9(생략)

### ○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 시행)

-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

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차상위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르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

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때에는 시·도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 □ 지방재정법

### ○ 제2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 ○ 제 110조(기금의 운용등)

-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 ○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 지역보증재단법

### ○ 제27조(보증료 등)

-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참작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기업 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보증료를 징수한다.
-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